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제6차 정기총회 식순

제6차 정기총회

- ○ 성원보고
- ○ 개회선언
- ○ 의안확정
- ○ 서기 및 의사록날인 선출
- ○ 의안심의
  - 의안 1호) 2020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 의안 2호) 2020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 승인
  - 의안 3호) 4기 임원선출
  - 의안 4호) 2021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 의안 5호) 2021년도 예산(안) 승인
  - 의안 6호) 정관변경 승인
  - 의안 7호) 기타안건
- ○ 의사록 채택
- ○ 폐회선언

별첨1 제5차 정기총회 의사록
별첨2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총회운영규약
별첨3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정관
별첨4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별첨5 제6차 정기총회 조합원명부
별첨6 20년도 5년이상 근속장려 포상자 명단
별첨7 2019년도 재무제표

2018~19년도 사옥건립 경과보고

2018.05.21 – 한국주택보증공사 HUG사업관련 융자신청 가능여부 1차상담
2018.06.12 – 사업계획서작성 후 한국주택보증공사 2차상담
2018.06.15 – 한국주택보증공사 예비승인 신청
2018.06.19 – 한국주택보증공사 예비승인 결정
2018.06.19 – 강북구 도시재생과 주무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담회
2018.06.19 – 수유1동 472-115.116 가계약
2018.06.20 – 한국주택보증공사 3차 방문상담
2018.07.02 – 25차이사회 사옥건립관련 심의
2018.07.05 – 임시총회개최 건립승인
2018.07.10 – 토지매입 계약
2018.07.17 – 26차이사회 자금확보방안 심의
2018.07.24 – 통합월례회의에서 직원공유
2018.07.25.~8월10일 – 희망출자금 모집
(78,760,000원 70명참여)
2018.07.30 – 자담건설 시공사 1차 미팅
2018.08.09 – 자담건설 시공사 2차 미팅
2018.08.14 – 한국주택보증공사 본심사 승인
2018.08.21 – 건축사 설계관련 미팅
2018.08.28 – 742-115번지 중도금상환
2018.08.29 – 신용보증기금 대출승인
2018.08.30 – 신나는조합 대출승인
2018.09.13 – 토지매입 및 등기완료
2018.09.21 – 건축사 설계관련 미팅
2018.10.05 - 통합월례회의 사옥설계안 공유
2018.11.11 – 빈집프로젝트 행사
2018.11.13 – 자담건설과 건축사 미팅
2018.11.19 - 자담건설과건축사 미팅
2018.11.15 – 신축부지 주변 주민 철거안내
2018.11.22.~25 - 지상 건물 철거
2018.11.27 – 토지경계 측량
2018.11.19 – 자담건설과건축사미팅

2018.11.15 – 신축부지 주변 주민 철거안내

2018.11.22.~25 - 지상 건물 철거
2018.11.27 – 토지경계 측량
2018.11.28 – 지질조사
2018.12.11 – 재개발 해제지역 건축심의 접수
2018.12.21 – 건축 심의통과
2019.01.02 – 자담건설과 건축사 미팅
2019.01.15 – 건축허가 접수
2019.01.28 - 건축허가 완료
2019.02.07.- 건축착공신고 완료
2019.02.22 – 일시도로점용허가 완료
2019.03.26. – 공사 착공
2019.05.15. – 지하층 지반공사 완료
2019.06.12. – 골조 공사
2019.07.20. – 골조완료
2019.08.15.- 방수공사 및 조적 완료
2019.09.09. – 미장공사 완료
2019.09.21. – 지붕 공사 완료
2019.09.27. – 외장 노출완료
2019.09.30. – 창호완료
2019.09.28. – 비계철거
2019.10.10. – 건축물 측량

2019.10.14. - 정화조완료

2019.10.21.- 천정공사 완료

2019.10.24. - 단열공사 완료

2019.10.29. - 내부타일공사 완료

2019.11.07. - 엘리베이터 완료

2019.11.08. - 석공사, 설비, 전기공사 완료

2019.11.08. - 부대토목 및 조경 완료

2019.11.09. - 준공접수

2019.11.11. - 도장공사 완료

2019.11.12. - 바닥공사, 준공청소 완료

2019.11.12. - 건축물 준공특검

2019.11.13. - 장애인시설 검사

2019.11.15. - 외부 데크 완료

2019.11.18. - 사무소이전

2019.11.20. - 사용승인 허가

2019.11.30. - 로비공사, 싸인 공사 완료

2019.12.27. - 지역복합돌봄센터 개소식

「의안 1호」

20년 사업결과 (안) 승인

■ 주문사항 : 2020년도 사업결과 및 평가(안)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2020년 사업결과고(안)

20년도 협동조합 조직현황보고

1. 조합원현황

(20.12.31. 현재 단위:명)

구 분	조합원수	성별		직원 조합원	후원 조합원	자원봉사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	취약 계층비율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
		남	여								
단위/명	174	11	163	152	11	9	1	2	129	0	25
비율(%)		6.3	93.7	87.4	3.6	5.2	0.6	1.1	74.1		14.4

2. 직원현황

(2020.12.31.현재 단위:명)

구 분	전체 직원	성별		사업단내부 겸직직원수	휴직자수	타기관 겸직
		남	여			
단위/명	232	16	216	51	2	1(장애1)
비율(%)	100	6.9	93.1	22		

3. 취약계층 고용현황

(2020.12.31현재, 단위명)

구 분	채용자수	고용율
고령자	153	71.5%
저소득층	6	
장애인	7	
합계	166명 / 232명중	

4. 연도별 사업단별 직원현황 (연평균)

(2020.12.31.현재, 겸직자포함.단위명)

사업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81	82	82	72	72	75	53
노인돌봄	사업중단	32	35	36	34	37	32
장애인	134	128	125	108	104	80	54
가사간병	12	13	15	14	12	14	14
발달주간/방과후	4						
주야간보호	5						
일시재가	7						
총계	**243**	**255(212)**	**257**	**230**	**222**	**206**	**153**

5. 직원 거주지역별 현황

(2020.12.31현재, 단위명)

사업명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시내	경기도	합계
장기요양	56	15	3	9	0	0	83
가사간병	10	2	0	0	0	0	12
장애인	97	19	7	6	2	3	134
발달주간/방과후	2			1		1	4
주야간보호	4		1				5
일시재가	7						7
총계	**176**	**36**	**11**	**16**	**2**	**4**	**245**

6. 직원 연령분포

(2020.12.31.현재, 단위명,%)

사업단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장기요양			1	25	44	12	82
가사						1	1
장애인	3		19	59	48	5	134
발달주간/방과후		1		2			3
주야간보호		1		2	2		5
일시재가		1	1	2	3		7
전체	**3**	**3**	**21**	**90**	**97**	**18**	**232**
20년도비율	**1.3**	**1.3**	**9.1**	**39**	**4.1**	**7.8**	**62.6**
19년도비율	**0.9**	**1.4**	**13.2**	**42.5**	**36.8**	**5.2**	**100**
18년도비율	0.9	1.4	15.8	42.6	34	5.3	100
17년도비율	0.5	0.9	17.7	46.0	31.6	3.3	100
16년도비율	0.5	1.1	20.1	47.1	27.5	3.7	100
15년도비율		0.1	17.7	51.0	26.3	4.9	100
14년도비율		1.1	21.0	54.5	21.0	2.4	100

7. 근속연수 분포

(2020.12.31.현재, 실인원)

사업단명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9년	10년~	합계/명
장기요양	13	17	16	20	13	4	83
가사간병	0					1	1
장애인	22	37	32	21	11	10	133
발달주간/방과후	2	1					3
주야간보호	3	1				1	5
일시재가	7						7
전체	**47**	**56**	**48**	**41**	**24**	**16**	**232**
20년도비율	**20.3**	**24.1**	**20.7**	**17.7**	**10.3**	**6.9**	**100**
19년도비율	**15.1**	**34**	**17.9**	**17.9**	**7.1**	**8.0**	**100**
18년도비율	13.4	35.4	25.4	10.0	8.1	7.7	100%
17년도비율	26.5	27.9	26.0	7.4	4.7	7.5	100%
16년도비율	22.7	42.9	13.7	8.5	6.9	5.3	100%
15년도비율	23.6	43.3	11.5	8.2	7.2	6.3	100%
14년도비율	46.1	25.5	12.8	10.6	1.4	3.5	100%

8. 근로시간 분포

(2020.12.31.현재,퇴사자포함,가족요양전담자포함)

사업단명	60시간미만	60이상~80미만	80이상~120미만	120이상~160미만	160시간이상	합계
통합	27	15	48	40	99	229
20년도비율	**11.8**	**6.6**	**21.0**	**17.5**	**43.1**	**100**
19년도비율						
18년도비율	12.2	7.4	25.7	22	32.7	100
17년도비율	4.9	14.5	30.2	19.0	31.4	100%
16년도비율	3.2	10.9	33.6	20.9	31.4	100%
15년도비율	9.7	13.3	33.2	16.3	27.6	100%
14년도비율	7.3	12.2	39.0	13.8	27.6	100%

120미만자 90명(39.3%), 120시간이상자 139명(60.7%), 전체평균 근무시간 153시간

9. 급여수준 분포

(2020.12.31.현재,퇴사자포함,가족요양전담자포함)

사업단명	60만원미만	60만원 ~90만원미만	90만원 ~120만원미만	120만원 ~170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합계
통합	14	19	40	44	112	229
20년도비율	**6.1**	**8.3**	**17.5**	**19.2**	**48.9**	**100%**
19년도비율						
18년도비율	10.2	18	17.1	18	36.7	100%
17년도비율	12.4	28.1	18.6	17.3	23.6	100%
16년도비율	12.2	31.4	20	36.4		100%
15년도비율	14.8	40,8	13.8	30.1		100%
14년도비율	13.8	45.5	11.4	29.3		100%

20년도 평균급여 1,543,837원

10. 직원복리증진 사업 (직원복리 및 조직활동비)

사업유형	목적 및 내용	연계기관	시기/개최일	인원	소요금액	합계/원
직원안전관리비	감염물품지급 및 구입비	자체	연중	207	4,996,272	18년도 30,304,007 17년대비 -19%감소 17년도 37,398,948 16년대비 23%증가 16년도 30,380,120 15년대비 10%증가 * 15년도 27,635,960
직원 쉼 지원	야유회및체육대회	자체	11월27	216	10,700,000	
설/추석 명절선물지급	보상체계	자체		216	21,140,000	
우크렐레, 걷기모임,텃밭모임	취미활동을 통한 직원의 정서유대강화	자체	연중	26	1,326,000	
경조휴가비지급	보상체계	자체	연중	9	2,683,000	
독감접종	직원질환예방	자체	20.10~11	147	4,470,000	
근속장려포상	보상체계	자체	20.12.31	73	14,600,000	
고용안정기금	보상체계	자체	연중	3	600,000	
활동지원사치료비	의료비지원	자체		2	218,500	
합계				899	60,733,772	

11. 건강검진 수검 현황

사업단명	대상자수	검진자수	증감율	19년 검진율	18년 검진율	17년 검진율	16년 검진율	15년 검진율
장기요양			0	100%	100%	84.8	96%	97%
가사간병			0	100%	100%	100	88%	96%
장애인	134	131	97.7	98%	99%	92.5	68%	97%
발달주간 활동	4	3	75%					
주야간보호	5	5	100					
일시재가	7	3						
전체(%)	**143**							

12. 신규직원 입사경로

(2020.12.31.현재)

사업단명	인원	입사동기 및 사유				
		직원권유	주변(이용자)소개	인터넷등	공채	자진(재)입사
장기요양	18	10				
가사						
장애인	37	5	7		1	14
발달주간	3	1			2	
주야간보호	5				5	
일시재가	7	1			6	
전체	**70**	**17**	**7**	**0**	**14**	**14**

13. 퇴사직원 사유

(2020.12.31.현재)

사업단명	인원	퇴사사유					
		건강문제	업무부적응	이용자미연계	동종업종이직	개인사정	타업종이직
장기요양	11	2	2			7	
가사							
장애인	26	1		1	10	9	5
발달주간							
주야간보호	2		1		1		
일시재가							
합계	**37**	**3**	**2**	**1**	**10**	**16**	**5**

1년미만자:8명,1년차:7명,2년차:2명,3년차:5명.4년차:4명,5년차:2명,6년차:3명,8년차:1명,10년이상:4명

14. 이용자현황 (연도별 평균)

(2020.12.31현재)

사업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115	106	108	98	94	87	62
노인돌봄	사업중단	44	54	65	67	66	71
장애인	150	152	150	136	116	87	60
가사간병	16	21	21	17	13	20	25
발달주간	7						
발달방과후	3						
주야간보호	11						
일시재가	30						
총계	**332**	**323**	**333**	**316**	**290**	**260**	**218**

15. 서비스 시간 (연도별 월평균)

(2020.12.31현재)

사업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6,271	6,560	6,689	6,304	6,996	6,513	4,580
가사간병	445	1,437	1,696	1,829	1,989	1,891	2,056
장애인	22,698	22,175	22,000	18,940	16,633	12,459	8,443
발달장애인	339						
발달방과후	81						
주야간보호	1760						
일시재가	641						
총계	**32,235**	**30,172**	**30,385**	**27,073**	**25,618**	**20,863**	**15,079**

16. 이용자 보장구분

(2020.12.31.현재)

사업명	기초수급자	차상위(경감)	일반	합계
장기요양	49	29	40	118
가사간병	14	2		16
장애인	82	13	55	150
발달장애인주간	4		6	10
주야간보호	3	4	4	11
일시재가	49	9	4	62
총계	**149**	**44**	**101**	**294**
비율(%)	**50.7%**	**14.9%**	**34.4**	**100**

17.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

(2020.12.31현재)

동별구역	번1	번2	번3	삼각산	삼양	송천	미아	송중	수유1	수유2	수유3
인원/명	10	22	54	34	17	11	25	5	27	18	16
동별구역	인수	우이	도봉	노원	성북	서울시내		경기권		총합계	
인원/명	44	14	16	13	9	5		1			

* 강북구상위지역순 : 번3-인수-삼각산-수유1-미아

18. 이용자 입소경로

(2020.12.31현재)

사업단명	입소총계	사유별 입소자수				
		사업단이관	직원권유	타기관(주변)의뢰	구청(안내문)	재입소
장기요양	40	8	18	6	6	2
가사간병		1		1		1
장애인	29		12		15	2
발달장애					10	
주야간보호	11	6	3	2		
일시재가	63				63	
전체	**143**	**15**	**33**	**9**	**94**	**5**

19. 이용자 퇴소사유

(2020.12.31현재)

사업단명	퇴소총계	사유별 퇴소자수					
		사망	시설및병원입소	서비스변경 (타기관이관)	직원 매칭못함	서비스 불만족	기타
장기요양	39	3	15	1	1	8	11
가사간병	6			2	2		2
장애인	24	2	3	14	2		3
발달장애							1
주야간보호	1			1			
일시재가	4	2	1	1			
전체	**74**	**7**	**19**	**19**	**5**	**8**	**17**
합계		**45**			**13**		
비율		**60.9%**			**39.1%**		

「의안 2호」
2020년 결산(안) 및 감사보고 승인

■ 주문사항 : 2020년도 결산(안) 승인과 미처분잉여금의 처분, 탈퇴조합원 출자금반환 및 감사보고를 의결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재 무 상 태 표

제 7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6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15,170,123		422,500,345
(1) 당 좌 자 산		615,170,123		422,500,345
보 통 예 금		332,234,193		112,039,865
미 수 금		282,935,930		310,427,320
선 납 세 금		0		33,16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2,331,451,693		2,328,146,117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2,326,011,693		2,327,606,117
토 지		990,240,169		990,240,169
건 물	1,222,448,520		1,222,448,5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5,654,748	1,186,793,772	5,093,535	1,217,354,985
시 설 장 치	46,098,000		44,998,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719,531	35,378,469	1,499,931	43,498,069
차 량 운 반 구	54,725,300		26,973,3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885,070	43,840,230	404,510	26,568,790
비 품	86,879,290		51,557,9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7,120,237	69,759,053	1,613,846	49,944,104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440,000		540,000
기 타 보 증 금		5,440,000		540,000
자 산 총 계		2,946,621,816		2,750,646,462
부 채				
Ⅰ. 유 동 부 채		483,194,460		377,241,914
미 지 급 금		55,050,929		24,938,000
예 수 금		58,567,981		14,432,644
가 수 금		11,852,860		0
미 지 급 비 용		357,722,690		337,871,270
Ⅱ. 비 유 동 부 채		1,721,974,200		1,796,974,200
장 기 차 입 금		1,721,974,200		1,796,974,200
부 채 총 계		2,205,168,660		2,174,216,114
자 본				
Ⅰ. 자 본 금		284,458,770		247,054,960
출 자 금		284,458,770		247,054,96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456,994,386		329,375,388
법 정 적 립 금		99,800,054		96,733,054

2020년 결산보고(안)

재 무 상 태 표

제 7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6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미처분이익잉여금		357,194,332		232,642,334
(당기순이익)				
당기 : 127,618,998 원				
전기 : 91,478,485 원				
자본총계		741,453,156		576,430,348
부채및자본총계		2,946,621,816		2,750,646,462

손 익 계 산 서

제 7(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6(전)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5,628,533,618		4,411,031,823
서 비 스 매 출	5,603,513,618		4,390,351,823	
장 기 근 속 장 려 금	25,020,000		20,680,000	
Ⅱ. 매 출 원 가		0		0
Ⅲ. 매 출 총 이 익		5,628,533,618		4,411,031,82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688,913,246		4,482,023,560
직 원 급 여	4,607,091,267		3,771,179,010	
잡 급	11,869,840		6,168,880	
퇴 직 급 여	395,107,570		284,068,720	
복 리 후 생 비	444,612,732		317,990,917	
(사 회 보 험 지 원 금)	136,335,050		111,403,240	
여 비 교 통 비	1,963,748		2,526,500	
통 신 비	10,300,622		9,223,810	
수 도 광 열 비	4,922,050		0	
전 력 비	6,733,120		0	
세 금 과 공 과 금	14,126,620		3,389,610	
감 가 상 각 비	65,767,764		9,404,757	
지 급 임 차 료	1,583,400		9,330,000	
수 선 비	2,081,950		0	
보 험 료	12,289,510		5,425,170	
차 량 유 지 비	3,958,095		1,146,518	
교 육 훈 련 비	29,719,618		31,809,140	
도 서 인 쇄 비	2,593,200		1,991,450	
회 의 비	2,313,770		10,306,900	
사 무 용 품 비	1,269,910		1,483,110	
소 모 품 비	16,302,307		13,145,842	
지 급 수 수 료	23,826,402		65,260,072	
광 고 선 전 비	11,300,250		1,643,160	
네 트 워 크 사 업 비	4,983,500		2,903,540	
조 직 사 업 비	4,519,360		20,692,060	
이 용 자 관 리 비	16,426,559		13,097,064	
잡 지 출	6,442,451		4,450,490	
지 역 공 헌 사 업	2,200,000		3,162,070	
생 계 비	17,214,571		0	
프 로 그 램 사 업 비	9,170,630		0	

손 익 계 산 서

제 7(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6(전)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액		금액	
업무추진비	4,567,480		3,638,000	
V. 영업손실		60,379,628		70,991,727
VI. 영업외수익		231,344,838		190,643,525
이자수익	219,774		266,397	
후원금	3,300,000		3,658,700	
정부지원	200,780,100		169,849,580	
잡이익	27,044,964		16,868,848	
VII. 영업외비용		34,420,342		25,781,863
이자비용	33,200,413		23,176,863	
기부금	120,000		100,000	
반환금	1,099,929		2,505,00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36,544,868		93,869,935
IX. 법인세등		8,925,870		2,391,450
법인세등	8,925,870		2,391,450	
X. 당기순이익		127,618,998		91,478,48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당)기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년 월 일
회사명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

제 6(전)기2019년 03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년 월 일

(단위 : 원)

과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367,194,332		232,642,33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9,575,334		141,163,849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5. 중간배당금	0		0	
6. 당기순이익	127,618,998		91,478,485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계		367,194,332		232,642,334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1. 이익준비금	0		0	
2. 기업합리화적립금	0		0	
3. 배당금	0		0	
가. 현금배당	0		0	
나. 주식배당	0		0	
4. 사업확장적립금	0		0	
5. 감채적립금	0		0	
6. 배당평균적립금	0		0	
7. 재무구조개선적립금	0		3,067,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67,194,332		229,575,334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통예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5001	국민은행(장기요양		26,760,567	
95002	국민은행(방과후서		1,243,614	
95003	국민은행(장애인바		43,314,484	
95004	국민은행(가사간병		3,755,547	
95005	국민은행(예수금)		32,014,327	
95006	국민은행(출자금)		143,470,393	
95007	신협		12,599	
95009	KB보증서담보대출		5,341	
95010	지정기부금		3,696,075	
95011	지역자산화 일자리		559	
95012	서울사회적경제보조		5,694	
95013	법정적립금(006619		27,733,054	
95014	국민은행(주간데이		7,195,849	
95015	국민은행(발달주간		3,559,194	
95016	국민(305센터일시지		39,463,263	
합 계			332,234,193	

미수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276,256,930	
00104	가사간병사업		1,711,000	
00191	발달주간활동서비스		4,968,000	
합 계			282,935,930	

토지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1	토지		990,240,169	
합 계			990,240,169	

건물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2	건물		1,222,448,520	
203	감가상각누계액		-35,654,748	
합 계			1,186,793,772	

시설장치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6	시설장치		46,098,000	
207	감가상각누계액		-10,719,531	
합 계			35,378,469	

차량운반구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8	차량운반구		54,725,300	
209	감가상각누계액		-10,885,070	
합 계			43,840,230	

비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12	비품		86,879,290	
213	감가상각누계액		-17,120,237	
합 계			69,759,053	

미지급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85	현대캐피탈(모닝)		7,211,381	
00188	위킹레일합부금		19,416,351	
00189	현대캐피탈(스타렉		19,302,924	
00190	현대캐피탈(레이)		9,120,273	
합 계			55,050,929	

예수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54	예수금		58,567,961	
합 계			58,567,961	

가수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57	가수금		11,852,560	
합 계			11,852,560	

미지급비용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339,827,710	
00104	가사간병사업		5,051,690	
00191	발달주간활동서비스		12,843,290	
합 계			357,722,690	

기타보증금 명세서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45	세콤(N56613695)		140,000	
00153	(주)모든		400,000	
00188	워킹레일합부금		4,900,000	
합 계			5,440,000	

주문1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승인

정관제63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조합의 정관에 따라 19년 12월까지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10,221,861원에 대해 법정적립금 30%인 일금 3,066,558원과 20년도 당기순이익 127,618,998원에 대한 법정적립금 38,285,699원을 합쳐 41,352,257원을 법정적립금 계좌에 적립하며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89,333,299원은 21년도 사업비로 이월한다.

[참고 : 법정적립금 내역]

7기 20년도 : 3월27일 20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8,285,699원

6기 19년도 : 19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066,558원

5기 18년도 : 3월12일 18년도 재무구조적립금 53,143,976원

4기 17년도 : 4월06일 17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0,123,544원

3기 16년도 : 4월18일 16년도 재무구조적립금 8,972,702원

2기 15년도 : 3월29일 16년도 재무구조적립금 4,492,832원

2~7기 법정적립금 총 138,085,311원 / 국민은행 487137-01-006619

주문2 > 2020년 ~ 총회일 현재 탈퇴조합원 출자금 반환 승인

[반환대상 조합원]

조합원명	조합원유형	탈퇴일	반환 출자금액
최선경	직원조합원	2020-04-01	651,000원
오예진	직원조합원	2020-04-06	585,000원
김미리	직원조합원	2020-04-30	426,000원
임윤숙	직원조합원	2020-05-01	733,150원
김미용	직원조합원	2020-05-01	2,145,030원
이영미	직원조합원	2020-05-01	498,000원
박순덕	직원조합원	2020-09-01	1,370,160원
전성이	직원조합원	2020-09-01	426,000원
장영진	자원봉사조합원	2020-09-01	1,350,730원
장경숙	직원조합원	2020-11-01	1,571,000원
이승미	직원조합원	2020-11-08	973,000원
황준남	직원조합원	2020-11-30	1,340,000원
서미자	직원조합원	2020-11-31	751,000원
김경아	자원봉사조합원	2020-11-31	221,670원
총인원수	14명	총금액	13,041,740원

[참고] 2020년도 영업 수입지출 수지보고서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1. 20년도 매출 결산보고 (1월~12월)

<수입부>

<20.12.31일 현재 단위:원>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바우처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발달주간활동	발달방과후	SOS센터	합계	구성비	세부내역
서비스수입	1,246,670,970	3,250,984,761	77,919,086	41,784,870	22,970,250	9,352,770	58,080,870	4,707,763,577	84.99%	
본인부담금	72,638,320	70,006,667	387,664	2,832,890	2,750,490		73,000	148,689,031	2.68%	
시구비추가수입		473,156,610			7,730,100			480,886,710	8.68%	장애인 시도추가
인력가산수가	111,175,650			14,443,000				125,618,650	2.27%	사회복지사 가산
중증장애인가산		16,110,000						16,110,000	0.29%	중증장애인가산
장기근속장려금	24,940,000			80,000				25,020,000	0.45%	장기요양근속수당
식재료수입				13,979,650	30,000			14,009,650	0.25%	식대수입
직무교육수당	5,565,470							5,565,470	0.10%	2020년직무교육수당
장애약물/교육보조		4,149,200						4,149,200	0.07%	장애인서울시보조
예금이자및잡수입	1,334,524	627,055	8,704,826	8,709	701,294	1,417		11,377,825	0.21%	
매출합계	**1,462,324,934**	**3,815,034,293**	**87,011,576**	**73,129,119**	**34,182,134**	**9,354,187**	**58,153,870**	**5,539,190,113**	100.0%	
과년도수입	3,915,000	31,733,720	-2,148,920					33,499,800		19년도사업간대여
법인전입및차입금				111,000,000	9,000,000			120,000,000		법정적립및출자전입
총수입금액	**1,466,239,934**	**3,846,768,013**	**84,862,656**	**184,129,119**	**43,182,134**	**9,354,187**	**58,153,870**	**5,692,689,913**		

< 매출원가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바우처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발달주간활동	발달방과후	SOS센터	합계	구성비	세부내역
급여	929,957,062	2,459,791,497	54,192,110	94,222,930	25,061,250	1,900,000	18,457,790	3,583,582,639	64.7%	서비스직원 급여
상여	8,250,000	5,460,720		9,550,000		1,900,000		25,160,720	0.5%	실무자명절상여
주차,연차,휴일 각종수당	250,583,568	744,353,220	15,851,110	418,750	806,160		7,101,430	1,019,114,238	18.4%	주휴수당
사회보험 사업자부담	79,019,340	277,258,346	4,347,130	11,138,520	2,479,000	317,890	1,304,690	375,864,916	6.8%	연금,건강,고용,산재 부담
퇴직적립	84,008,270	287,331,850	5,823,210	8,852,780	2,080,760	316,650	1,880,280	390,293,800	7.0%	총급여의 1/12
일용잡급	10,236,510	1,623,330						11,859,840	0.2%	무료돌봄서비스제공인건비
매출총이익	**1,362,054,750**	**3,775,818,963**	**80,213,560**	**124,182,980**	**30,427,170**	**4,434,540**	**28,744,190**	**5,405,876,153**	97.6	

<판매관리비 : 사무운영비 및 사업비>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바우처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발달주간활동	발달방과후	SOS센터	합계	구성비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0	0.0%	이사장업무추진비
회의비	813,850	1,402,320	74,600		23,000			2,313,770	0.0%	이사회및부문위원회 경비,정기총회
네트워크사업비	1,144,600	900,000		10,500	6,000			2,061,100	0.0%	한국돌봄조합비,강북사협회비등
여비교통비	1,472,400	250,000	50,000	191,748				1,964,148	0.0%	현장방문교통카드 충전
지급수수료	7,110,443	13,802,983	756,900	428,856	393,000	516,000	258,000	23,266,182	0.4%	세무기장,등기,승강기,세콤,퇴직연금등 수수료
사무용품비	784,770		182,550	182,500	37,600			1,187,420	0.0%	복사용지등 사무용품
도서인쇄비	1,775,200	719,000		99,000				2,593,200	0.0%	인수인계노트 제작
차량유지비	1,088,892	420,045		2,377,358	64,300	6,500		3,957,095	0.0%	이용자방문 차량주유
소모품비	1,344,644	2,243,650	98,600	3,834,536	928,670	238,100		8,688,200	0.2%	휴지및커피등 소모품비

장비렌탈 및 자동차할부	1,079,092	4,018,527	238,800	11,407,231	238,800			16,982,450	0.1%	재활기구및자동차 할부
전기요금	730,560	1,889,300	1,134,760	1,028,960	586,760	946,960		6,317,300	0.0%	전기요금
보험료	4,778,250	6,329,490		1,704,550	63,700			12,875,990	0.1%	차량보험료등
세금과공과	4,086,720	12,643,745		54,090				16,784,555	0.2%	법인세및주민세,재산세
통신비	3,125,812	5,951,590	314,670	711,340		54,040		10,157,452	0.3%	사무용 전화세, 단말기통신료,우편발송
도시가스	862,620	973,310		178,560	260,640	94,340		2,369,470	0.2%	도시가스
수도요금	3,125,812	230,200		149,920				3,505,932	0.0%	수도요금
복리후생비	23,090,460	33,598,762	802,940	684,820	879,000	38,000	600,000	59,693,982	0.1%	근속포상,명절상품권,안전관리,경조비,독감접종,근무복제작실무자식대지원,야유회등대체상ㅁ품권
홍보비	1,430,000	346,000		594,000				2,370,000	1.1%	신규사업 현수막 및 포스터등 제작
조직사업비	1,314,000	2,177,700	303,000					3,794,700	0.0%	동아리지원등
건물수선	2,666,950	200,000	200,000			66,000		3,132,950	0.1%	건물수리
교육훈련비	11,564,428	12,104,990	150,000	203,200	150,000	197,000		24,369,618	0.1%	직무역량 수당 및 월례회의기장 및
부식재료비	16,500			17,054,331	81,080	28,300		17,180,211	0.4%	조리실 식재료 및 이용자 간식구입
이용자관리비	5,298,444	7,654,360	725,462	1,099,303	633,973	18,497	185,660	15,615,699	0.3%	이용자 명절선물 및 기저귀등 구입
의료비				21,300	32,000	1,800		55,100	0.3%	이용자 응급약품구입등
프로그램비				58,55,803	2,054,357	1,033,050		8,943,210	0.0%	사무용차량유류 및 주차비등
자산취득	217,100	1,820,000	-2,260,000	3,184,720		500,000		3,461,820	0.2%	컴퓨터및집기등 구입
이자지불금	346,564	804,067		950,264				2,100,895	0.0%	차량등 할부이자
서비스비용반납		58,320	80,880					139,200	0.0%	서비스비용반납
잡지출	30,441,600	36,600	122,800	605,400	14,400		750,000	31,970,800	0.0%	
사업비합계	**109,709,711**	**110,574,959**	**2,975,962**	**52,612,290**	**6,447,280**	**3,738,587**	**1,793,660**	**287,852,449**	0.6%	

<영업이익 결산 >

사업팀	장기요양	장애인바우처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발달주간활동	발달방과후	SOS센터	총계
매출액	1,462,324,934	3,815,034,293	87,011,576	73129119	34,182,134	9,354,187	58,153,870	5,539,190,113
매출원가	1,362,054,750	3,775,818,963	80,213,560	124,182,980	30,427,170	4,434,540	28,744,190	5,405,876,153
매출총이익	**100,270,184**	**39,215,330**	**6,798,016**	**-51,053,861**	**3,754,964**	**4,919,647**	**29,409,680**	**133,313,960**
판매관리비	112,690,247	259,469,959	2,972,282	12,460,929	6,447,280	3,738,587	843,660	398,622,944
영업이익	**-12,420,063**	**-220,254,629**	**3,825,734**	**-63,514,790**	**-2,692,316**	**1,181,060**	**28,566,020**	**-265,308,984**

<영업외수익>

구분	국가보조금	기부금	법정적립
일자리안정자금	138,169,530		
사회적기업사회보험	136,335,050		
우수사회적경제기업	15,000,000		
사업주직업훈련	10,461,370		
지역자산화일자리창출	43,800,000		
우리동네나눔반장	15,000,000		
장기요양독감예방접종	2,080,000		
국민은행후원		3,000,000	
개인후원		300,000	
대여금			69,000,000
총액	**360,845,950**	**3,300,000**	**69,000,000**

<출자적립금 현황>

구분	19년도 잔액	20년기초출자	20년이용출자	주야간및발달대여	19년건축비용	토지잔금	출자반환	출자금총계
출자금	52,083,946	60,000	61,274,000	14,000,000	35,000,000	92,000,000	23,930,190	278,348,136

<부채현황>

구분	총대출액	20년 대출이자총액	총원금상환총액	대출잔액
국토교통부(허그)	1,500,000,000	19,126,970	0	1,500,000,000
신용보증기금	300,000,000	6,810,397	112,500,000	187,500,000
영업이익	**1,800,000,000**	**25,937,367**	**112,500,000**	**1,687,500,000**

2020년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회계감사 보고서

○ 감사일 : 2021년 3월 24일
○ 감사보고인 : 이사 송영숙 및 사무국 관계자
○ 감사자료 : 사업비 예결산서, 재무제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 등.

본 감사는 2020년 새로운 사옥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합리성, 집행과정의 적절성에 관하여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사 개요

제출된 결산보고서, 지출결의서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급여대장, 계정별 원장등의 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의견

1) 감사를 실행한 결과 법령등에 의거하여 지출결의서와 증빙이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계산도 정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예외적인 오류는 없었으며, 정당하게 잘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우리 조합은 신규 사옥을 건립하면서 시작한 신규 사업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주간활동 및 방과후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50%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계획대비 20%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사업은 2020년 6월 이후 영업 손실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안정화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주야간 보호센터 사업의 경우 많은 금액의 손실을 법적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영업손실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구체

적인 매출증대 및 사업 안정화 방안을 계획하고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3) 2)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손실의 상황에서 법정 적립금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신규 사옥을 건립하면서 단기 유동성(현금 흐름)에 문제가 몇 차례 발생하여, 종사자 급여지급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 이외에도 임의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을 통한 영업외수익의 경우 지출을 최소화 하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4) 우리 조합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 손실을 영업외수익(정부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 지원기간이 21년 3월로 종료되어 지난해 1억 3천 6백만원의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금이 올해는 2천 7백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 줄어들게 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및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줄어드는 수입만큼 더욱 촘촘하게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2021년, 우리 협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진을 꾸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우리 조합은 위기상황이 아닌 기회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체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변화된 의식과 국내 상황에 의해서 사업은 더욱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 및 회계 관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조합은 19년말 새로운 사옥을 건립하고 2020년에는 더 큰 도약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기대만큼 성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정기총회를 맞아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즐거운 우리 조합이 되기를 응원하며 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회계감사 정 경 수 (인)



[별첨]

2019년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일 : 2020년 2월 15일
감사보고인 : 이사 송영숙, 사업팀장 안정열
감사자료 : 사업비 예결산서, 재무제표, 지출결의서 등.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의 모든 조합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회계 감사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감사 결과

1.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의 살림살이는 회계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는 계좌와 일치하게 관리 되었으며, 지출행위는 정해진 절차에 맞춰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옥을 건립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준 사무국 직원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국은 전체 조합원을 대신하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우리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옥을 건립하면서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시설사업의 안정화 전까지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입 지출 계획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기존 재가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진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위협요인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길 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3.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영업손실이 확인됩니다. 우리 조합의 목적사업이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임으로 인건비의 집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 손실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비나 사업비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발견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과 이사회에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예민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우리 조합의 매출은 수가가 확대 됨에 따라 매년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 상승분으로, 우리가 사용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 및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 사업의 특성상 매출의 증가가 순이익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매출 증가에 현혹됨을 경계해주십시오.

5. 우리 협동조합은 영업 손실을 영업외수입(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금액 등)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에 주어지는 지원은 아닙니다. 당장 지원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없어도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협동조합은 우리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조합, 우리 회사의 대표이고 주인입니다. 우리 조합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동의 가치를 지급해주는 회사이며, 우리가 함께 아껴 키워나갈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운영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조합원들은 그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하여 우리 조합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예쁜 화초도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2020년은 우리 조합에게 어떤 1년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발전하고 있는 우리 협동조합을 보면 1년 후 우리가 어떻게 변해있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오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회계감사 정 경 수 (인)

「의안 3호」

4기 임원선출

■ 주문사항 : 4기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자 하오니
선출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4기 임원 입후보자 등록자

기호는 사업팀별 출마자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1. 이사장입후보자

기호1번
이사장
이 금 옥


2. 재가장기요양사업팀 (선출정수 5명 / 입후보자수 8명)

기호	기호1번	기호2번	기호3번	기호4번
입후보직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김 애 숙	김 연 중	김 영 화	박 숙 자
사진				

기호	기호5번	기호6번	기호7번
입후보직	이사	이사	이사
성명	이 성 자	전 복 재	정 용 숙
사진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 (선출정수 5명 / 입후보자수 8명)

기호	기호1번	기호2번	기호3번	기호4번
입후보직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남 종 식	박 미 옥	신 강 순	신 윤 도
사진				

기호	기호5번	기호6번	기호7번	기호8번
입후보직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윤 태 권	조 태 순	한 근 애	황 창 미
사진				

4. 시설사업팀 및 사무국 (선출정수2명 / 입후보자수 2명)

기호	기호1번	기호2번
입후보직	이사	이사
성명	송 영 숙	정성자
사진		

5. 자원봉사지, 후원자, 이용자 조합원 (선출정수1명 / 입후보자수 1명)

기호	기호1번
입후보직	이사
성명	김 태 진
사진	

7. 감사 (선출정수 회계감사1명,사업감사1명 / 입후보자수 회계감사1명,사업감사1명)

기호 입후보직	회계감사	기호 입후보직	사업감사
성명	이 막 례	성명	이 경 주
사진		사진	

4기 임원 입후보자 인적사항 및 약력

1. 이사장 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이금옥	이사장	62.04.21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2. 재가방문요양사업 및 가사간병사업팀 임원 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김애숙	이사	61.11.10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2	김연중	이사	60.02.06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3	김영화	이사	52.03.10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4	박숙자	이사	60.12.03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돔센터 교육위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5	이성자	이사	58.11.23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품질향상위원 (현)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동북권역 부협회장
6	전복재	이사	60.07.25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7	정용숙	이사	59.04.12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 임원 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남종식	이사	65.09.15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장애인운영위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2	박미옥	이사	60.06.04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3	신강순	이사	63.02.08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4	신윤도	이사	58.04.11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5	윤태권	이사	55.03.24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6	조태순	이사	63.01.29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7	한근애	이사	61.11.25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8	황창미	이사	63.04.05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

4. 시설사업팀 및 사무국 임원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송영숙	이사	71.07.04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븍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2	정성자	이사	68.06.24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장기요양 팀장 (현) 강북구청통합사례분과 위원

5. 자원봉사자, 후원자,이용자 임원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김태진	이사	73.12.03	자원봉사자 조합원	(현)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교육팀장

6. 회계감사 및 사업감사 입후보자

기호	성명	등록 구분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이막례	회계감사	50.12.02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교육위원(현)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활동지원사(현)
1	이경주	사업감사	71.01.10	생산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장 (현)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장

「의안 4호」
2021년 사업계획(안) 승인

■ 주문사항 : 2021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사업계획(안)

1. 기본사항

- 조직명칭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조직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 1항에 의거)
- 조직형태 : 비영리법인 (보건복지인가 제30호),
- 설립연월일 : 2014년 3월 25일
- 협동조합인가일 : 2014년 10월 15일
- 법인등기 : 2014년 11월 05일
- 사회적기업 인증 : 2016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제 2016-255호)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8년 09월 28일
- 서울시우수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2018년 12월 24일
- 지역복합돌봄센터 사옥건립 완공 : 2019년 11월
- 협동조합유공표창 : 2020년 07월01일

2. 조합원현황

(2021.01.01일 조합합 원명부기준)

구 분	조합 원수	성별		직원 조합원	후원 조합원	자원봉사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	취약 계층비율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
		남	여								
단위/명	174	11	163	152	11	9	1	2	129	0	25
비율(%)		6.3	93.7	87.4	3.6	5.2	0.6	1.1	74.1		14.4

3. 직원현황

(2021.01.01.현재)

구 분	전체 직원	성별		사업단 겸직	휴직자수	타기관 겸직
		남	여			
단위/명	209	12	197	38		3(장기1,장애2)
비율(%)	100	5.7	94.3	18.1		

4. 출자금현황

(21.01.01현재, 단위:원)

2020' 12월말 출자금 잔액	20년도 기초출자금납부액	20년도 이용출자 증자액	20년도 탈퇴조합원 출자반환금	출자금잔액
50,637,670	630,000	33,611,000		178,092,360

5. 임원 및 실무직원 현황

구 분	임원 총수	이사장	상무 이사	내부 이사	외부 이사	감사	사업 팀장	사회 복지사
단위/명	16	1	1	11	1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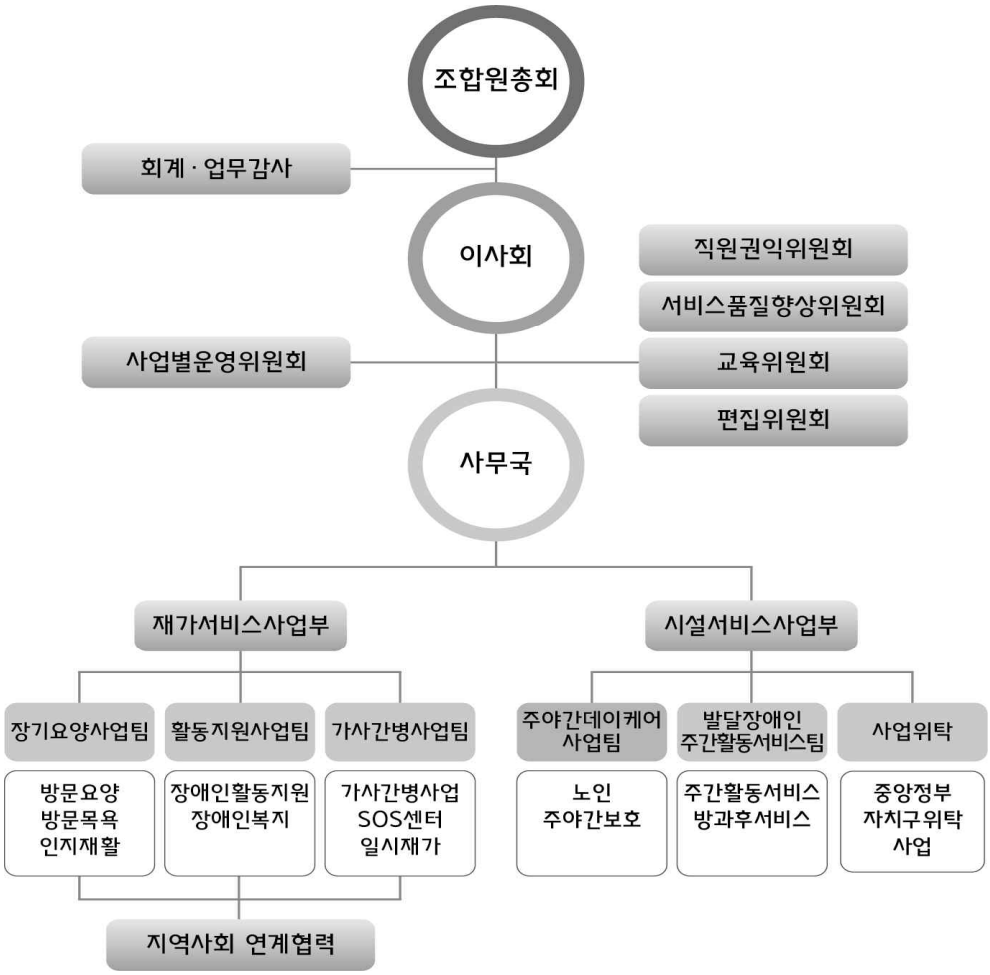
6. 주사업

- 돌봄서비스공급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조합원의 고용안정사업
- 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사업
- 기타 돌봄사회서비스 사업

7. 주사업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신설예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지자체 시설 위탁 및 공모사업
-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8. 조직도



Ⅰ. 2021년도 사업추진 방향

2021년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SOS사업이 본격화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이 특히 중요한 시기기이다. 또한 우리조합은 작년 사옥건립과 함께 시작된 시설사업이 코로나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방향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의 미션수립을 컨설팅 과정에서 3기 임원진 및 부문위원이 10회에 걸쳐 논의된 다음의 세부사업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Ⅰ. 조합의 주체역량 강화와 역할별 교육체계 설계

Ⅱ. 이용자와 서비스 질 향상

Ⅲ.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강화

Ⅳ. 신규 사업의 안착화

II. 목적별 세부사업 방향

사 명
서로 존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터 공동체를 만든다

핵심가치

참여	소통	좋은관계	즐거운일터	인권

목 적	활 동
1.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한다.	1-1.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1-2. 직무교육 운영
	1-3.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1-4. 이용자 조합원의 소통 확대
	1-5.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2.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2-1. 직원 복지 개선
	2-2. 보수 체계 구축
	2-3.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고충 상담
	2-4. 직원 자치 모임 개설 및 확대
3.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하고 실시한다.	3-1.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3-2. 조합원 유형별·역할별 교육 개설 및 운영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공헌 한다.	4-1.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4-2.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4-3.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4-4. 지역사회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5.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서비스 업종 조직과 소통과 연대한다.	5-1.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5-2.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5-3.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 핵심성과 지표

1. 목적 :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 현장의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 품질위원회의를 통해 초안을 개발하고 사례를 선정 • 초안을 가지고 조합원과 사례관리토론회 실시(1회) • 전체 조합원과 현장토론(1회)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직무교육 운영	• 돌봄서비스 관련 직무교육 (소통교육(대화의 기술) 등) 및 활동지원사 및 요양사 역량강화 교육 : 질환별 교육 및 전문지식 교육	돌봄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 이용자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 소통노트 사례발표로 활용 촉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인수인계 노트를 활용하였는가?
이용자와의 소통 확대 (간담회, 소식지, 안내문 발행 등)	• 이용자 간담회 실시(1년 1회) • 정기적인 정보제공(소식지, 안내문) – 소식지 : 편집위원회 – 이용자보호자 안내 및 문자 • 현장 서비스 방문 모니터링 및 (해당) 직원에게 공유	이용자조합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소통을 개선하고 있는가?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1년1회 만족도설문조사 실시 • 권역별 방문설문조사 실시 • 사업계획에 반영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2. 목적 :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직원 복지 제공	–건강관리 : 모든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2차 검진 포함), 독감예방주사 등 –근무환경개선 : 현장체크리스트* 통한 사전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상담지원 : 정신건강, 감정노동 문제 발생시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직원건강검진, 현장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직원복지활동 : 조합원의 쉼과 회복위한 복지 증진 (야유회, 체육대회, 표창자 수(금액), 고용안정기금 지원 등) -정기적인 권익위회의 실시(장기근속자 및 기타사유시 유급휴가 등 논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공하는가?
보수 체계 구축*	• 보수체계 구축(근속수당, 월급제) -재무구조 검토 및 현장과 소통 필요 -체계구축에 5년 계획 -전직원 대상 참여, 현재 1회 실시(연 3~4회 목표) -이사회의에서 안건으로 계획수립 및 의결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고충상담	• 현재 연1회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의견 제시 시 사업계획에 반영 • 직원 고충상담(어려움, 개선사항 등)을 통한 질적 조사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직원 자치 모임 추가 개설 및 운영	• 소모임, 부문위원회 등 직원의 자치활동을 활성화	직원 자치 모임 지원을 통해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는가?

3. 목적 :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내년 하반기 진행 목표 -사무국 초안→교육위 검토→이사회→ 20년 상반기 교육체계 설계 완료 → 20년 하반기 실행	총체적인 조합원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했는가?
조합원 유형별·역할별 교육 개설 및 운영*	• 협동조합 유형별, 역할별(이사, 사무국, 현장) 조합원 교육 • 소모임, 조합원, 이사 등 협동조합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개설* - 프로그램 운영으로 리더 발굴 → 설계 이후 세부 내용 확정	협동조합 구성원별로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운영하는가?

4. 목적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지역공헌사업비 편성 및 인력 배치	지역사회 돌봄 사각계층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 취약계층 우선고용(여성, 기초수급자, 고령) -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였는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는가?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 후원조합원(후원기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조합원 확대, • 팥죽나눔행사(정기적 행사) 등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 후원조합원을 확보하여 후원금액을 증액하였는가? 자원봉사 조합원을 확보하였는가? 후원기금을 통해 지역공헌활동(행사)을 실시하였는가?
지역사회 행사시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 강북행복상담소, 사회적경제박람회, 지역행사 등 참여	지역사회 행사를 통해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하고 있는가?

5. 목적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서비스 업종과 연대와 소통으로 협업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 한국돌봄 정책연대 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 강북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활동 -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강북구 지역돌봄네트워크 연대(MOU 체결) - 지역사업 건강,의료,돌봄,복지 관련 현재 7개 조직과 MOU체결하여 구청 홍보활동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네트워트 관련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가?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 지역돌봄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지역 도시재생 사업 연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공동활동을 추진하는가?

「의안 5호」

2021년 예산(안) 승인

■ 주문사항 :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2021년 추정재무상태표

(7기: 2021년 01월 01일 ~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1. 매입채무	
가. 보통예금	108,500,000	2. 지급어음	
나. 매출채권		3. 단기차입금	
다. 받을어음		4. 미지급금	
라. 기타		5. 선수금	
2. 재고자산		6. 기타	
가. 상품과 제품		Ⅱ. 비유동부채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 장기차입금	
다. 재료		2. 임대보증금	
라. 기타		3. 퇴직급여충당부채	
Ⅱ. 비유동자산		4. 제준비금	
1. 투자자산		5. 기 타	
2. 유형자산		부채총계(Ⅰ+Ⅱ)	
가. 토지		Ⅲ. 자본금	
나. 건물		1. 출자금	
다. 기계장치,선박		가. 기초출자금	1,000,000
라. 비품		나. 조합비&후원금	3,000,000
마. 공구·기구		다. 증좌출자금	15,000,000
바. 차량운반구	10,000,000	2. 목적출자금	
사. 시설장치		가. 기금출자금	
3. 무형자산		Ⅳ. 이익잉여금	99,500,000
4. 기타비유동자산		1. 법정적립금	
가. 임차보증금		2. 임의적립금	
나. 기타		자본 총계(Ⅲ+Ⅳ)	
자산 총계(Ⅰ+Ⅱ)	**118,500,000**	**부채 및 자본총계 (Ⅰ+Ⅱ+Ⅲ+Ⅳ)**	**118,500,000**

2021년 추정손익계산서

(7기: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Ⅰ.매출액	**5,420,030,000**	12.차량유지비	22,632,000
1. 재가장기요양 사업	1,431,520,000	13.여비교통비	4,200,000
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280,640,000	14.소모품비	6,360,000
3. 가사간병지원사업	88,300,000	15.사무용품비	6,600,000
4. 주야간데이케어	307,450,000	16.연료비	3,900,000
5. 주간활동서비스	154,520,000	17.전기료	6,300,000
6. 일시재가서비스	157,600,000	18.상하수도비	1,800,000
Ⅱ.매출원가	**5,080,516,200**	19.도서인쇄비	2,010,000
1.급여 및 제수당	4,283,936,960	20.지급수수료	28,000,000
2. 상여	36,400,000	21.이용자관리비	31,820,000
3.잡급	9,012,240	22. 프로그램비	22,800,000
4.퇴직연금적립	348,933,000	23.생계비	38,500,000
5.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	402,234,000	24.지역공헌	3,000,000
Ⅲ.매출총손익(Ⅰ-Ⅱ)	**339,513,800**	**Ⅴ.영업손익(Ⅲ-Ⅳ)**	**4,963,000**
Ⅳ.판매비와 관리비	**334,550,800**	**Ⅵ.영업외수익**	**118,340,000**
1.광고선전비	1,050,000	1.이자수익	80,000
2.회의비	9,080,000	2.조합비	
3조직사업비	13,240,000	3.국고보조금	115,340,000
4.네트워크사업비	2,400,000	4.기부금	3,000,000
5.통신비	10,852,800	5.잡수익	
6.교육훈련비	23,300,00	**Ⅶ.영업외비용**	**23,803,000**
7시설장비유지및수선비	14,116,000	1.이자비용	22,800,000
8.업무추진비	900,000	2.특별손실	
9.복리후생비	51,045,000	3.기타	1,003,000
10.보험료	9,145,000	**Ⅷ.당기순손익(Ⅴ+Ⅵ-Ⅶ)**	**99,500,000**
11.세금과공과	21,500,000		

「의안 6호」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 주문사항 :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해 주십시오

정관변경 사항

제안 설명 :

1. 제18조 출자 :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창립초기 10,000,000원으로 금액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조합의 상황에 맞게 정관내용 현실화하고자 함
2. 제54조 사업의 종류 : 우리 조합이 지향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적 가치를 반영하고 향후 돌봄사업의 제도적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규사업은 없고 이미 폐지 사업은 여전히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업의 종류 각 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삭제, 신설, 수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정관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 (출자)	② 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10,000,000원이다.	② 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1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54조 (사업의 종류	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5.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6. 사회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7.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2. (삭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신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 (신설)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 서비스** **(이하 순번 자동변경)**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6.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7. (수정)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지자체 시설위탁 및 공모사업** 8.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기타안건

■ 주문사항 : 기타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별첨자료」

1. 제15차 정기총회 의사록
2. 총회운영규칙
3. 정관
4.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5. 제16차 정기총회 조합원명부
6. 20년~21년 5년 근속장려포상 조합원명단

「별첨1」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제5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제5차 정기총회
2. 공 고 일 : 2019년 03월01일
3. 개최일시 : 2019년 03월 12일(화요일) 18시00분~20시30
4. 개최장소 :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공연장

5. 5차 정기총회 사전행사 / 18:00~19:00

1) 인사말 - 이경주 이사장

2) 축사1 - 강북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대표 서경석 회장

3) 부문위원위촉장 수여

(권익위원회 김교숙,전연희조합원, 품질향상위원회 김애자,안수현 조합원)

4) 모범조합원 표창

(신윤아,임윤숙,조성자,박숙자,이미숙,김교숙,김금자,권미정,김미영,송민정,윤미영, 이정임,정연자,최재임,김진선 총15명)

6. 정기총회

가. 성원보고

조합원 213명 중 (128)명이 참석하였음을 송영숙 상무이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선언

이경주이사장이 재적조합원 213명 중 (128)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이 되었으므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회의진행 설명

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을 의장이 설명하다. 질문이나 이의가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각 안에 이의나 반대가 없으실 경우는 명찰을 들어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후 의견을 말하거나 찬성하는 경우는 동의, 제청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다. 동의와 제청을 받은 후 만장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조합원의 박수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을 통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다 말하다

라. 의안의 확정

이경주 이사장이 사전에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따라 심의할 것을 조합원에게 묻자 (안정열)조합원의 동의와 (안현여)조합원의 제청으로 제안된 안건과 순서대로 심의하기로 하다.

마, 총회의사록 서기 및 총회의사록 날인자 선출

의장이 의사록 서기로 최영희조합원과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김경자, 주옥화, 전병조 조합원을 추천하자 (이성자)조합원의 동의와 (임재임) 조합원이 제청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하여 선출되다

바. 의안 심의

(의안1호) 2018년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의장이 권종화 회계감사에게 회계보고를 주문하다. 권종화 회계감사가 보고하다. 의장이 조합원의 질문이나 의견을 묻고 다른 질의나 이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자 (박현희)조합원이 동의하고
(안정임)조합원이 제청하여 박수로 조합원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다.
의장이 장원봉 사업감사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송영숙 상무이사에게 제출된 감사보고에 대해 발제를 주문하다. 의장이 조합원의 질문이나 의견을 묻고 다른 질의나 이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자
(김세정) 조합원이 동의하고 (조태순)조합원 제청하여 전체 박수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다.

질문: (조태순) 조합원이 회계감사가 2시간에 가능한지를 물었고 (송영숙) 조합원이 답변하였다.

질문: (황창미)조합원이 감사 보수 지급건에 대해 물었고 (이경주)이사장이 답변하였다.

(의안2호) 2018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

의장이 송영숙 상무이사에게 이사회에서 상정한 2018년도 사업 및 평가(안) 설명을 주문하다. 송영숙 이사가 자료집을 이용해 사업결과를 보고 하다. 의장이 보고를 듣고 다른 질의나 이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2018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할 것을 주문하자,(안수현) 조합원이 동의하고 (남종식)조합원이 제청하였고 이사장이 참석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물어 전체 박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안3호) 2018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송영숙 상무이사에게 이사회에서 상정한 2018년도 결산(안)의 설명을 주문하다. 송영숙 상무이사가 자료집을 이용해 결산(안)을 설명하고 자료집 36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18년도 당기순이익 177,146,587원에서 정관에 따른 법정적립금 30%인 53,143,976원을 적립하고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
124,002,611원을 19년도 01월 급여지급을 위해 전액 차기년도로 이월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이 보고에 따른 다른 질의나 이의사항이 있는지 묻자 (이성자)조합원이 찬성하고 (안숙희)조합원이 제청하였고 이사장이 참석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물어 전체 박수로 승인하다.

(의안4호) 3기 임원선출

이경주이사장이 임원선출을 위해 김태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진행을 주문하다. 김태진 선관위원장이 의장석에 배석하여 전체조합원에게 선거관리규약에 의거 입후보등록명단, 임원선출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황창미) 조합원이 선거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고 (김태진)선거관리위원장이 설명했다.

김태진위원장이 선거방법에 대해 모두 이해했는지 묻고 모두 이해되었다고 답한 후 투표에 앞서 이사 및 감사로 출마한 입후자에게 각각 1분간의 출마의 변을 해줄 것을 주문하다. 입후보자 모두 연단으로 나와 기호순에 따라 출마의 변을 말하다. 이어 앞줄 순서대로 나와 선거인명부에 서명 후 투표용지를 받고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빌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20 시 00 분)

투표가 완료되고 김태진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산옥, 김애자, 안현여, 정성자 선거관리위원이 개표를 진행하다.
김태진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다. 참석조합원(213)명중
(147)이 투표해 이사로 (김교숙,김영화,윤미영,박미옥,송영숙,신강순,이경주,이금옥,임정숙,장경혜,전복재,조태순,한근애,황창미)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어 감사2명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정경수 조합원 투표자 총 213 명 중 (108) 표로 회계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장원봉 총(213)명중 (102)표로 사업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21 시 05 분)

이어서 당선된 이사들이 앞으로 나와 연단에 서다. 송영숙 상무이사가 이사장으로 이경주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경주이사장으로 선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합원 전체의 박수로 이사장을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이경주이사장이 1,2기 임원들을 연단으로 올라오라 주문하고 4년동안 협동조합을 위해 애쓰셨던 노고를 감사드린다고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고 조합원들이 박수를 치다. 신임와 전임이사들이 협동조합에서 준비한 기념선물을 전달하다. 조합원 전체에게 인사를 하고 이경주이사장이 의장석에 배석하다.

(의안4호) 2019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이 송영숙이사에게 이사회에서 상정한 2018년도 사업계획안의 설명을 주문하다. 송영숙이사가 자료집을 이용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다.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자

(장경숙)조합원이 동의하고 (김혜자)조합원이 제청하였고 전체조합원 수로 2019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안5호) 201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이사회에서 상정한 2019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주문하다. 송영숙이사가 자료집을 이용해 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자 (이성자)조합원이 동의하고 (박미옥)조합원이 제청하였고 조합원 전체가 박수로 동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기타 안건

의장이 추가로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 없는지 묻고 의견이 없자 의견 심의를 마치겠다고 하다.

사. 의사록채택

의장이 최영희 서기에게 총회의사록 낭독을 요청하고 최영희 서기가 총회의사록을 낭독하다. 의장이 총회의사록에 이의가 없는지 물은 후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의사록을 채택 선언하다. 의사록 날인자로 선출된 전병조, 주옥화, 김경자 조합원이 연단으로 나와 의사록에 서명을 하다.

(김영화)조합원이 동의 하고 (이성자) 조합원이 제청으로 의사록이 채택되다.

아. 폐회 선언

의장이 이대로 제5차 정기총회를 폐회해도 될지 묻다.

이에 참석자 모두가 찬성하므로 의장이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의 제5차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1시35분)

이 사 장 : 이 경 주 (인)

서명날인인 : 김 경 자 (인)

서명날인인 : 전 병 조 (인)

서명날인인 : 주 옥 화 (인)

「별첨2」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총회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8조에 따라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와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와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와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와 통지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의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사항)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과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와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 총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와 장소
4. 재적 조합원수와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과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5년 4월 28일 1차 정기총회

「별첨3」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돌봄사회서비스 공급과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바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터 공동체 실현과 인간존중의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

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의 별도 법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및 경영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이용할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등을 기부하거나 자금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출자금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출 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고,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3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② 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10,000,000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이때의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

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조합원 외 임원의 추천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1호~8호)을 제외한 총회의 위임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무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업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조합의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다.

1.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2.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사업
3. 기타돌봄사회서비스

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5.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6. 사회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7.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③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돌봄사회서비스 연구 및 개발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사업계획서 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⑥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55조(소액대출)

①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4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의 이자율은 2%으로 한다

⑤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3%으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등 소액대출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능력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4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한다.

제56조(상호부조)

①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 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4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한다.

제57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 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 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 8 장 회 계

제5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③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운영 시 각 사업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관청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2조(기부금의 사용과 공개)

① 조합은 기부금을 모집하되 그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나 친목도모가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해야하며 불특정한 다수를 그 수혜자로 한다.

②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며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주주의 일반원칙)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상식의 관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3조 (임원의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관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014년 3월 25일 창립총회 제정
2018년 04월06일 제4차정기총회 변경

「별첨4」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과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 (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와 자격심사
3. 선거인과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1,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 (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이사와 감사의 선거)
①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와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1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년 4월 28일 1차 정기총회

「별첨5」 제6차 정기총회 조합원 명부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1	강옥정	직원조합원	18	김부기	직원조합원	35	김운순	직원조합원
2	강효숙	직원조합원	19	김선순	직원조합원	36	김원자	직원조합원
3	강효순	직원조합원	20	김성례	직원조합원	37	김월옥	직원조합원
4	고석희	직원조합원	21	김성림	직원조합원	38	김재미	직원조합원
5	권미정	직원조합원	22	김세정	직원조합원	39	김정화	직원조합원
6	권심화	직원조합원	23	김순덕	후원조합원	40	김진선	직원조합원
7	권종화	직원조합원	24	김순자	직원조합원	41	김진연	직원조합원
8	김경자	자원봉사 조합원	25	김순주	직원조합원	42	김태진	자원봉사 조합원
9	김경하	직원조합원	26	김애경	직원조합원	43	김화영	직원조합원
10	김교숙	직원조합원	27	김애숙	직원조합원	44	김효임	직원조합원
11	김금자	직원조합원	28	김양임	직원조합원	45	김희선	직원조합원
12	김덕순	직원조합원	29	김연중	직원조합원	46	나오숙	후원조합원
13	김명숙	직원조합원	30	김연희	직원조합원	47	남종식	직원조합원
14	김명희	자원봉사 조합원	31	김영진	후원조합원	48	노성자	직원조합원
15	김미애	직원조합원	32	김영화	직원조합원	49	민남조	직원조합원
16	김미영	직원조합원	33	김오이	직원조합원	50	박동운	직원조합원
17	김미정	직원조합원	34	김용인	직원조합원	51	박미옥	직원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52	박복례	직원조합원	72	송민정	직원조합원	92	유모개	자원봉사 조합원
53	박분연	직원조합원	73	송복자	직원조합원	93	유민순	직원조합원
54	박소영	직원조합원	74	송성아	직원조합원	94	유정순	자원봉사 조합원
55	박송화	직원조합원	75	송영란	직원조합원	95	유혜경	직원조합원
56	박숙자	직원조합원	76	송영숙	직원조합원	96	윤기옥	직원조합원
57	박옥자	직원조합원	77	신강순	직원조합원	97	윤미영	직원조합원
58	박옥희	직원조합원	78	신소정	직원조합원	98	윤영애	직원조합원
59	박종임	후원조합원	79	신윤도	직원조합원	99	윤정분	직원조합원
60	박지후	직원조합원	80	신윤아	직원조합원	100	윤태권	직원조합원
61	박현희	직원조합원	81	안숙희	직원조합원	101	이경숙	직원조합원
62	박희숙	직원조합원	82	안정열	직원조합원	102	이경주	생산자조합원
63	방춘분	직원조합원	83	안정임	직원조합원	103	이금옥	직원조합원
64	백승여	직원조합원	84	안현여	직원조합원	104	이막례	직원조합원
65	서연실	직원조합원	85	양동숙	직원조합원	105	이명수	직원조합원
66	서영란	직원조합원	86	양쌍희	후원조합원	106	이미숙	직원조합원
67	서원자	직원조합원	87	오미경	직원조합원	107	이복여	직원조합원
68	손유경	직원조합원	88	오순자	직원조합원	108	이성자	직원조합원
69	손점순	직원조합원	89	오영옥	직원조합원	109	이성재	직원조합원
70	손정란	직원조합원	90	오영은	후원조합원	110	이세영	직원조합원
71	손지경	직원조합원	91	우호영	직원조합원	111	이연주	직원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112	이영례	직원조합원	133	전복재	직원조합원	154	최경해	직원조합원
113	이영숙	직원조합원	134	전연희	직원조합원	155	최미경	후원조합원
114	이이순	직원조합원	135	전지원	직원조합원	156	최미자	직원조합원
115	이재순	직원조합원	136	전지혜	직원조합원	157	최영희	자원봉사 조합원
116	이정민	직원조합원	137	전춘여	직원조합원	158	최윤영	직원조합원
117	이정용	직원조합원	138	정경수	후원조합원	159	최재금	직원조합원
118	이정임	직원조합원	139	정성자	직원조합원	160	최재임	직원조합원
119	이정자	직원조합원	140	정순자	직원조합원	161	최정숙	직원조합원
120	이정희	자원봉사 조합원	141	정연자	직원조합원	162	최종두	직원조합원
121	이창희	직원조합원	142	정용숙	직원조합원	163	최종원	직원조합원
122	이혜영	직원조합원	143	정진숙	직원조합원	164	한근애	직원조합원
123	임명숙	직원조합원	144	정해경	직원조합원	165	한미숙	직원조합원
124	임세엽	직원조합원	145	조명숙	후원조합원	166	한현규	직원조합원
125	임숙현	직원조합원	146	조선숙	직원조합원	167	함금순	직원조합원
126	임재임	직원조합원	147	조성자	직원조합원	168	함정균	이용자조합원
127	임정숙	직원조합원	148	조신자	직원조합원	169	허명자	직원조합원
128	장경혜	후원조합원	149	조용임	직원조합원	170	황윤경	직원조합원
129	장은순	직원조합원	150	조태순	직원조합원	171	황은영	자원봉사 조합원
130	장은희	직원조합원	151	주선희	직원조합원	172	황인순	직원조합원
131	장현숙	후원조합원	152	주옥화	자원봉사 조합원	173	황창미	직원조합원
132	전병조	직원조합원	153	천영심	직원조합원	174	황희옥	직원조합원

「별첨6」 2020년 5년 근속장려포상 조합원명단

지급일: 2020.12.31

순번	사업팀	이름	성별	나이	입사일	산정기준일	근속기간
1	가사간병	신윤아	여	5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	가사간병	조성자	여	7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	장기요양	강효순	여	6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	장기요양	권종화	여	7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	장기요양	김교숙	여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	장기요양	김부기	여	6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7	장기요양	김선순	여	6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8	장기요양	김성례	여	7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9	장기요양	김세정	여	5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0	장기요양	김순자	여	7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1	장기요양	김애숙	여	60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2	장기요양	김양임	여	5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3	장기요양	김연희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4	장기요양	김영화	여	6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5	장기요양	김용인	여	6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6	장기요양	김운순	여	6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7	장기요양	김정화	여	5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8	장기요양	김화영	여	6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19	장기요양	박복례	여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0	장기요양	박소영	여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1	장기요양	박숙자	여	6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2	장기요양	박옥희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3	장기요양	송민정	여	47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4	장기요양	송복자	여	6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5	장기요양	송영숙	여	50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6	장기요양	안정임	여	7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7	장기요양	안현여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8	장기요양	유민순	여	7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9	장기요양	윤영애	여	5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0	장기요양	이경숙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1	장기요양	이금옥	여	5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2	장기요양	이막례	여	7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3	장기요양	이미숙	여	6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4	장기요양	전병조	여	70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5	장기요양	전연희	여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6	장기요양	정용숙	여	6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7	장기요양	최미자	여	5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8	장기요양	한현규	여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39	장기요양	함금순	여	6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0	장애인	권미정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1	장애인	김명숙	여	5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2	장애인	김순주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3	장애인	김월옥	여	6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4	장애인	김재미	여	6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5	장애인	김진선	여	6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6	장애인	남종식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7	장애인	박미옥	여	6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8	장애인	박현희	여	7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49	장애인	방춘분	여	5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0	장애인	서원자	여	5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1	장애인	손정란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2	장애인	신윤도	남	63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3	장애인	안정열	여	5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4	장애인	오순자	여	6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5	장애인	우호영	여	4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6	장애인	유혜경	여	6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7	장애인	윤기옥	여	5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8	장애인	이이순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59	장애인	이재순1	여	7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0	장애인	이창희	여	6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1	장애인	임재임	여	66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2	장애인	장은순	여	6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3	장애인	정순자	여	64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4	장애인	정연자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5	장애인	조신자	여	61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6	장애인	조태순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7	장애인	최윤영	여	65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8	장애인	최재금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69	장애인	최재임	여	60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70	장애인	최정숙	여	62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71	장애인	한근애	여	60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72	장애인	황인순	여	59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73	장애인	황창미	여	58	2014-11-03	2020-12-31	6년 1개월

2021년 5년 근속장려포상 예정자 명단

2021년 04월01일 지급예정

순번	사업팀	이름	성별	나이	입사일	기준일	근속년수
1	장애인	김희선	여	49	2016-01-04	2021-03-31	5년2개월
2	장애인	박분연	여	61	2016-01-08	2021-03-31	5년2개월
3	장애인	천영심	여	60	2016-02-01	2021-03-31	5년2개월
4	장애인	박옥자	여	76	2016-03-06	2021-03-31	5년0개월
5	장애인	이정용	여	51	2016-03-07	2021-03-31	5년0개월
6	장애인	김덕순	여	54	2016-03-24	2021-03-31	5년0개월

「별첨7」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422,600,345		304,748,604
(1) 당 좌 자 산		422,600,345		304,748,604
보 통 예 금		112,039,865		304,606,064
미 수 금		310,427,320		0
선 납 세 금		33,160		142,45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2,328,146,117		1,023,292,672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2,327,606,117		1,023,292,672
토 지		990,240,169		984,169,799
건 물	1,222,448,6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093,635	1,217,354,985		
시 설 장 치	44,998,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99,931	43,498,069		
차 량 운 반 구	26,973,300		7,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04,510	26,568,790	4,601,327	2,398,673
비 품	51,557,96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13,846	49,944,104		
건 설 중 인 자 산		0		36,724,20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40,000		0
기 타 보 증 금		540,000		0
자 산 총 계		2,760,646,462		1,328,041,176
부 채				
Ⅰ. 유 동 부 채		377,241,914		127,071,089
미 지 급 금		24,938,000		0
예 수 금		14,432,644		51,902,727
단 기 차 입 금		0		75,168,362
미 지 급 비 용		337,871,270		0
Ⅱ. 비 유 동 부 채		1,796,974,200		703,724,200
장 기 차 입 금		1,796,974,200		703,724,200
부 채 총 계		2,174,216,114		830,795,289
자 본				
Ⅰ. 자 본 금		247,064,960		178,092,360
출 자 금		247,064,960		178,092,36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329,375,388		319,153,527

재 무 상 태 표

제 6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6(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법 정 적 립 금		96,733,054		34,616,376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32,642,334		284,537,151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0,221,861 원				
전기 : 177,146,587 원				
자 본 총 계		676,430,348		497,245,88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60,646,462		1,328,041,176

손 익 계 산 서

제 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5,467,644,753		3,514,322,255
서 비 스 매 출	5,446,964,753		3,514,322,255	
장 기 근 속 장 려 금	20,680,000		0	
Ⅱ. 매 출 원 가		0		0
Ⅲ. 매 출 총 이 익		5,467,644,753		3,514,322,255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658,964,174		3,539,991,391
직 원 급 여	4,743,245,460		2,977,486,267	
상 여 금	5,500,000		3,225,000	
잡 급	7,517,660		4,778,290	
퇴 직 급 여	363,034,650		239,126,940	
복 리 후 생 비	400,306,907		142,603,327	
(사 회 보 험 지 원 금)	111,403,240		58,281,690	
여 비 교 통 비	3,085,900		3,102,650	
통 신 비	10,889,221		10,861,700	
세 금 과 공 과 금	3,529,320		64,217,150	
감 가 상 각 비	9,693,623		1,444,327	
지 급 임 차 료	10,328,800		10,845,000	
보 험 료	5,399,670		50,034,360	
차 량 유 지 비	1,396,748		2,096,450	
교 육 훈 련 비	43,279,060		25,175,800	
도 서 인 쇄 비	1,991,450		1,235,860	
회 의 비	17,884,400		15,016,360	
사 무 용 품 비	1,508,110		1,698,560	
소 모 품 비	13,149,742		2,436,980	
지 급 수 수 료	67,920,838		7,171,705	
광 고 선 전 비	2,241,220		1,202,810	
네 트 워 크 사 업 비	2,977,940		3,164,750	
조 직 사 업 비	20,692,060		11,930,970	
이 용 자 관 리 비	21,730,393		12,468,695	
잡 비	5,589,352		1,609,920	
지 역 공 헌 사 업	3,152,070		776,910	
업 무 추 진 비	4,322,820		4,563,300	
Ⅴ. 영 업 손 실		191,319,421		145,996,830
Ⅵ. 영 업 외 수 익		232,406,671		256,158,159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이 자 수 익	266,397		962,818	
조 합 비	0		-11,616,450	
후 원 금	3,658,700		6,000,000	
정 부 지 원	204,908,460		214,960,000	
잡 이 익	23,573,014		4,088,745	
Ⅶ. 영 업 외 비 용		28,473,839		9,145,400
이 자 비 용	25,868,839		4,396,150	
기 부 금	100,000		3,334,350	
반 환 금	2,505,000		0	
잡 손 실	0		1,414,900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2,613,311		179,580,577
Ⅸ. 법 인 세 등		2,391,450		2,433,990
법 인 세 등	2,391,450		2,433,990	
Ⅹ. 당 기 순 이 익		10,221,861		177,146,587

보통예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8001	국민은행(장기요양)		2,105,186	
98002	국민은행(노인돌봄)		4,184,850	
98003	국민은행(장애인바우처)		23,168,963	
98004	국민은행(가사간병)		2,086,413	
98005	국민은행(예수금)		12,016,138	
98006	국민은행(출자금)		52,083,946	
98007	신협		12,896	
98009	KB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5,341	
98010	지정기부금		596,477	
98011	일자리창출사업		4,733,391	
98013	법정적립금(006619)		11,048,264	
합 계			112,039,865	

미수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262,864,440	
00103	노인돌봄사업		44,993,880	
00104	가사간병사업		2,569,000	
합 계			310,427,320	

선납세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8001	국민은행(장기요양)		3,950	
98003	국민은행(장애인바우처)		17,920	
98004	국민은행(가사간병)		1,670	
98005	국민은행(예수금)		5,950	
98006	국민은행(출자금)		3,670	
합 계			33,160	

토지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1	토지		990,240,169	
합 계			990,240,169	

건물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2	건물		1,222,448,620	
203	감가상각누계액		-5,083,636	
합 계			1,217,364,986	

시설장치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6	시설장치		44,908,000	
207	감가상각누계액		-1,499,931	
합 계			43,498,069	

차량운반구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8	차량운반구		26,973,300	
209	감가상각누계액		-404,510	
합 계			26,568,790	

비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물품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12	비품		61,667,960	

비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13	감가상각누계액		-1,613,846	
합 계			49,944,104	

미지급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78	기아자동차(주)	모닝 할부금잔액	10,100,000	
00178	기아자동차(주)	레이 미지급금	14,838,000	
합 계			24,938,000	

예수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54	예수금		14,432,644	
합 계			14,432,644	

미지급비용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309,854,500	
00103	노인돌봄사업		18,609,550	
00104	가사간병사업		9,407,220	
합 계			337,871,270	

장기차입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39	주택도시보증공사		1,521,974,200	

장기차입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8009	KB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275,000,000	
합 계			1,796,974,200	

출자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337	출자금		247,054,960	
합 계			247,054,960	

법정적립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353	법정적립금		96,733,054	
합 계			96,733,054	

기타보증금 명세서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법인세신고)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45	세콤(N5613695)	세콤보증금	140,000	
00183	(주)모든	복사기,복합기 렌탈보증금	400,000	
합 계			540,000	